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월남전쟁 참전 인정기간 확대〉

■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784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 월남전쟁 참전 인정기간 확대	3
※ 참고자료	9

I. 제안경위

1. 제안자 : 전재수의원 등 11인
2. 제안일 : 2025. 6. 12.
3. 회부일 : 2025. 6.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월남 참전인정기간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월남 전쟁이 실제 종전된 날은 1975년 4월 30일이나 이 법에 따른 월남 참전인정기간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로 한정함에 따라 월남 주재 한국군 사령부가 마지막으로 철수한 이후에 미처 현지를 탈출하지 못한 우리 교포와 대사관 직원 등을 고국으로 귀환시키기 위한 작전 수행에 참여한 군인들은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월남 참전기간을 현행 ‘1973년 3월 23일’에서 월남 전쟁의 종전일인 ‘1975년 4월 30일’로 개정함으로써 월

남전쟁 참전으로 인한 이 법에 따른 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Ⅲ. 검토의견 : 월남전쟁 참전 인정기간 확대

- 개정안은 월남전쟁 참전 인정기간 종료일을 현행 ‘1973년 3월 23일’에서 월남전쟁 실제 종전일인 ‘1975년 4월 30일’로 개정하여 참전 유공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2. -----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19 <u>75년 4월 30일까지</u> ----- ----- -----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1 <u>975년 4월 30일</u> ----- -----

군인 다. ~ 마. (생 략)	--- 다. ~ 마. (현행과 같음)
--------------------------------	------------------------------------

□ 현행법은 월남전쟁 참전기간을 월남전쟁 참전협상을 위해 선발대가
과건된 1964년 7월 18일부터 ‘파리평화협정¹⁾’에 따라 우리 군이 철수한
1973년 3월 23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월남 주재 한국군 사령부가 철수한 이후 내전 중인 베트남
에서 우리 교포와 대사관 직원 등을 고국으로 귀환시키기 위한
작전(일명 ‘십자성 작전’) 수행에 참여한 군인들의 경우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 ‘십자성 작전’은 1975년 4월 6일부터 5월 16일까지 해군 269명이
편성되어 한국 대사관 및 교민 철수 지원, 물자 및 인원 수송 등의
임무를 수행한 국군 최초 해외 교민 구출 작전임.

□ 이에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월남참전기간을 월남전쟁의 종전일인
‘1975년 4월 30일’까지로 확대하여 위험지역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군인들을 참전유공자로 인정함으로써, 작전 수행에 참여한 군인
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가보훈영역에서 예우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
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관련하여, 동일한 취지의 개정안이 제19대국회부터 지속적으로 발의²⁾.

1) 1973년 1월 27일 남베트남, 북베트남, 남베트남 해방전선 및 미국이 조인한 베트남전쟁 종결을 약속한
협정으로 모든 참가국은 베트남의 독립, 주권, 통일성, 영토를 존중하고 60일 이내 군사를 철수하는 내용
이 담겨있음.

논의되었고, 국가보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월남전 십자성 작전 참전자들이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것(2022년)”, “월남전 당시 십자성 작전에 투입되었던 분들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2024년)”을 지적한 바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입법취지와 함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에서 추가하려는 참전 인정기간은 ‘파리평화협정’에 따라 우리 군이 철수한 이후의 기간으로, 개정안과 같이 월남전쟁 참전기간을 확대하는 것이 1973년 1월 27일 체결된 협정에서 규정한 ‘60일 이내에 모든 참가국은 베트남으로부터 군사를 철수한다’는 내용과 양립 가능한 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³⁾.
- 둘째, 리비아 교민철수작전⁴⁾이나 아덴만 여명작전⁵⁾ 등과 같이 십자성 작전과 유사하게 교전 및 전투 위험 아래에서 수행된 여러 작전이 ‘참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⁶⁾에서 ‘십자성 작전’을 ‘참전’으로 인정하는 경우 다른 비슷한 작전도 함께 통일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2) 제19대국회 김성찬의원안(2014.3.19. 발의), 제20대국회 김성찬의원안(2017.3.22. 발의)·전재수의의원안(2019.5.10. 발의), 제21대국회 전재수의의원안(2020.12.24. 발의)·태영호의원안(2022.2.4. 발의)

3) 다른 나라의 사례로서, 미국은 「Title 38 of the U.S. Code」(제대군인법)에 따라 참전기간을 1975년 5월 7일까지 인정하고 있고, 호주는 베트남전 준전투 복무(Warlike Service) 기간을 추가로 1975년 4월 29일까지 인정하고 있음(참고 1 참조).

4) 2011년과 2014년 리비아 내전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군이 항공 전세기, 해군 청해부대, 육로를 총동원하여 현지 교민과 외국인들을 대피시키고 국내로 송환한 구출 작전

5) 2011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출항하여 스리랑카로 향해하던 한국 삼호주얼리호를 13명의 무장 해적이 습격하여 선박 장악, 청해부대(최영함)에 의한 인질 구출 작전

6) 국방부는 해외구호 활동을 참전으로 인정한 사례가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셋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⁷⁾은 현재 이 법과 동일 기간 및 대상에 대하여 월남전쟁 참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전체 법 체계의 일관성 측면에서 이 법을 개정하는 경우 함께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⁸⁾

-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⁹⁾에 따르면, 개정안과 같이 참전유공자의 범위에 십자성 작전 참여 군인을 추가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총 55억 5,800만원(연평균 11억 1,2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바, 이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하겠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참전명예수당	835	876	919	958	1,005	4,593	919
의료지원	172	178	183	188	194	915	183
국립묘지 안장	9	9	9	13	10	50	10
합계	1,016	1,063	1,111	1,159	1,209	5,558	1,112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고엽제후유증환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轉役)·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從軍)한 기자(이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나. (생략)
 3. · 4. (생략)
 8) 그 밖에 참전과 관련된 법률로서 「군인연금법」은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전투에 참가한 기간을 3배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9) 참전명예수당, 의료지원, 국립묘지 안장비용을 합산하여 추계한 것으로, 생활수준 조사 등을 통해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한 생계지원금 지급, 양로지원, 요양지원, 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추계 대상에 제외됨. 또한, 국가보훈부에서 십자성 작전 참여 군인 생존인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월남전 참전군인의 2024년 기준 생존율(54.7%)로 추정하여 추계됨.

□ 아울러, 제21대국회 우리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파리평화협정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참전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월남전쟁 참전기간을 바꾸지 않으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¹⁰⁾ 다른 입법적 대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 6·25전쟁 및 월남전쟁 이외의 전투 또는 작전에 참여한 사람은 국가를 위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준하는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에게 합당한 지원을 하려는 취지의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윤한홍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1098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향후 법안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부는 ‘십자성 작전’ 참여 군인들에 대한 예우 필요성은 공감하나 외교적 문제나 국방부의 인정기준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기존 참전유공자법 체계에 포함하기보다는 포괄적인 지원체계인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안으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외교부는 월남전 ‘참전 기간’ 변경 문제는 ‘파리평화협정’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국방부는 국회는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등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

10) 제21대국회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3.5.16.) 및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3.6.20.)

는데 ‘십자성 작전’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해외구호 활동을 참전으로 인정한 사례가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07

참고 1

각국의 월남전 참전기간 인정 현황

○ 대한민국

- 한국군 참전기간 : 1964. 7. 18. ~ 1973. 3. 23.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미국 : '64. 8. 5. ~ '75. 5. 7. * '75. 5. 7. 포드대통령 종전선언
(베트남 국가 내에서 복무한 군인의 경우 '61. 2. 28.부터 인정)

☞ 전투병력은 '73. 3. 29. 철수, 군사고문단·의료 및 지원병력은 1975년까지 잔류하여 군사지원 지속(미·월방위공약), 남베트남 패망 : 1975.4.30.

○ 호주 : '62. 7. 31. ~ '73. 1. 11.

※ '20년 베트남전 준전투 복무(Warlike Service) 기간 추가 : '73. 1. 12. ~ '75. 4. 29.

☞ 베트남 잔류 인력과 베트남 내전 당시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재파병된 공군 인원의 복무기간을 준전투 복무로 인정

자료 : 국가보훈부

참고 2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위험작전 범위)

※ '25. 6. 26. 윤한홍의원 대표발의

구 분	전투·작전명	내 용
서해 수호	제1연평해전 (‘99.6.15.)	북한 경비정 7척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충돌 공격함에 따라 교전이 이루어진 해상 전투
	제2연평해전 (‘02.6.29.)	북한 경비정 1척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격파 사격 등 교전을 실시한 직접 교전 작전
	대청해전 (‘09.11.10.)	북한 고속정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대응 사격 등 교전을 실시한 직접 교전 작전
	연평도 포격전 (‘10.11.23.)	북한이 한국령 연평도에 기습적인 포격 도발을 한 직접 교전 작전
	천안함 피격 (‘10.3.26.)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이남 지역에서 한국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을 잠수정의 어뢰로 피격한 직접 교전 사건
국민 구출	십자성 작전 (‘75.4.6.~ ‘75.5.16.)	베트콩과 남베트남 간 교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기의 상황에서 남베트남 패망 당시 한국 정부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실시한 교민 구출 및 해외 난민 구호 작전
	아덴만 여명작전 (‘11.1.18.~ ‘11.1.21.)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출항하여 스리랑카로 항해하던 한국 삼호주얼리호를 13명의 무장 해적이 습격하여 선박 장악, 청해부대(최영함)에 의해 인질 구출 작전 실시

자료 : 국가보훈부

